

# 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1월 5일

발 의 자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 심현정, 김성기, 이은미의원

## 1. 제안이유

우리군 결산검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, 수당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 위원 '5명' → '5명 이상 7명 이내'로 확대(안 제2조관련)

나. 결산검사 추천적격자로 재무관리 전문가 포함(안 제4조관련)

다. 수당 증액(10만원 → 20만원) (안 [별표] 관련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3. 12. 14. ~ 2024. 1. 3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3. 12. 7. ~ 2023. 12. 14. 의견 없음.

##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정수)”를 “(위원의 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정수는 5명으”를 “수는 5명에서 7명이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3. 공인회계사·세무사·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별표의 수당 금액란 중 “100,000”을 “200,0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

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(제11조 관련)

구 분	금 액	비 고
수 당	일당 금 <u>200,000</u> 원	
여 비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“별표 5”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의원은 군의원에 준한다.	

## 【관계법령】

### 지방자치법

- 제150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50조 제1항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[별표]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상 수당금액을 일당 금100,000원에서 금200,000원으로 인상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의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